#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채익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69 발의연월일: 2020. 6. 25.

발 의 자:이채익·이명수·추경호

권은희 • 전봉민 • 정희용

홍준표 • 박성민 • 권명호

김기현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

2019년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65세 이상의 노인 보행자는 총 743 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규모의 약 22%를 차지하는 등 교통약 자인 노인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이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 이 시급한 상황으로, 현행법은 노인 보행자의 폭넓은 보호를 위해 노 인복지시설, 자연공원, 도시공원 및 생활체육시설과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특정한 '시설' 주변도로를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, 실질적으로 노인 보행자의 통행 수요가 많은 전통시장이나 노인 주거비율이 높은 주택지역 등 시설이 아닌 장소적 개념이 적용되는 공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극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의 범위를 시설뿐만 아니라 장소까지 포함되도록 확대하는 한편, 전통시장, 병원 및 노인 주거비율이 높은 주택을 예시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함으로써 노인 보호구역을 활성화하 고 일상 생활 범위에서 노인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향상시키고자 함.

### 주요내용

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의 범위에 시설뿐만 아니라 장소를 추가 규정하고,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장소의 예시로서 전통시장, 병원 및 노인 주거비율이 높은 주택을 추가함(안 제12조의2제1항).

법률 제 호

#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3호의2에 따른 시설의"를 "제3호의2에 따른 시설 또는 장소"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의2 중 "노인이"를 "전통시장, 병원, 노인 주거비율이 높은 주거지역 등 노인이"로, "시설"을 "시설 또는 장소"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정 혅 행 개 아 제12조의2 (노인 및 장애인 보호 제12조의2 (노인 및 장애인 보호 구역의 지정 및 관리) ① 시장 구역의 지정 및 관리) ① ----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---제3호의2에 따른 시설 및 및 제3호의2에 따른 시설의 주 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 장소----인 보호구역으로, 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1. ~ 3. (생략) 1. ~ 3. (현행과 같음) 3의2. 그 밖에 전통시장, 병원, 3의2.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 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 노인 주거비율이 높은 주거지 역 등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는 시설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<u>시설</u> 또는 장소